

이승주 연구원

요약

2021년 기록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독일 보험산업 손실액이 통계 도입 이래 최대치를 기록함. 현재 독일에서는 50%의 건물이 폭우와 홍수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연방주마다 보험 가입률의 현저한 차이가 보임. 이미 2003년, 2015년 풍수해보험 의무화 도입이 무산됐지만, 최근 그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정치권은 풍수해보험 의무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임. 우리나라 또한 재해취약지역 중심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있는바, 독일의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 동향을 참고할 수 있음

- 2021년 기록적인 폭우,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독일 보험산업 손실액이 통계 도입 이래 최대치를 기록함¹⁾
 -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가재도구, 사업장 및 차량 피해규모가 125억 유로에 달하여 1970년대 통계 도입 이래 최대임
 - 피해액 125억 중 90억 유로는 폭우와 홍수에 기인했으며, 20억 유로는 우박 그리고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15억 유로의 주거건물, 가재도구, 사업체 등 재물 및 자동차 손실액이 발생함
 - 특히 7월 중순 저기압 베른트(Bernd)로 인해 발생한 폭우가 독일 서부를 강타하여 82억 유로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중 77억 유로는 주거용 건물, 가재도구, 사업체 그리고 4억 5천만 유로는 자동차 손실에 기인함
 - 기후변화 연구 단체 세계기후특성(World Weather Attribution Initiative; WWA)과 독일 기상청이 7월 폭우와 관련한 기상이변 현상에 대해 수행한 공동 연구의 결과는 금번 폭우와 기후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함
 - 19세기 말부터 지구 평균 온도가 1.2도 상승하여 서유럽에 폭우가 내릴 확률이 1.2배에서 9배, 강수량은 3~19%까지 증가하였으며, 지구 표면 온도 2도 상승 시 폭우 확률은 최대 6% 상승함
 - 동 연구결과를 통해 기상전문가들은 향후 이와 같은 기상이변 현상의 주기가 더욱 짧아졌음을 시사함
- 현재 독일에서는 평균적으로 50%의 건물이 폭우와 홍수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연방주마다 보험 가입률의 확연한 차이가 존재함²⁾
 - 독일 주거용 건물의 94%가 폭풍우와 우박을 보장하는 보험에는 가입돼 있으나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폭우 및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평균 가입률은 46%에 불과하며, 주마다 확연한 차이를 보임³⁾
 - 서독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폭우와 홍수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94%에 달하지만, 북독일의 브레멘주는 28%에 머물러, 극심한 편차를 보임

1) GDV(2021. 12. 27), "2021 teuerstes Naturgefahrenjahr für die Versicherer"

2) GDV(2022. 5. 18), "Nur die Hälfte der Gebäude in Deutschland sind richtig gegen Naturgefahren versichert"

3) Statista(2021. 4), "Anteil der Wohngebäude, die gegen Sturm- und Hagel- sowie gegen Elementarschäden versichert sind nach Bundesländern"

- 특히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가입률이 높은 이유는 1993년까지 적용되었던 풍수해보험 의무화 정책에 기인하며 신연방주⁴⁾(평균 50% 이상)의 가입률은 통일 이전 구동독 정부에 의해 적용된 가계보험에서 기인함⁵⁾

○ 이미 대규모 홍수 피해를 계기로 2003년, 2015년 풍수해보험 의무화 도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음⁶⁾

- 2003년 폭우로 인해 엘베강 독이 붕괴돼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TF팀을 구성하여 풍수해보험 도입 의무화를 고려하였으나 보험 가입 의무화의 법적 성질로 인해 무산됨
 - TF팀은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장한도를 제한하거나 인수를 강제하는 행위는 보험회사의 기본법⁷⁾상 직업의 자유(Berufsfreiheit)를 침해하고 국민에게 계약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행동의 자유(Handlungsfreiheit)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
 - 이와 같은 시도는 2015년 청원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2003년과 마찬가지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거대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회사의 지불능력에 대한 회의로 인해 무산됨

○ 그러나 최근 그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독일 정치권에서는 풍수해보험 의무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⁸⁾

- 2022년 6월 열린 법무부장관회의에서 풍수해보험 의무화가 안고 있는 법적 문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기로 결정함⁹⁾
 - 특히 리스크 기반 보험료 산출을 전제로 재해취약지역의 보험 가입자에게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보험 가입자가 재산피해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충분한 자기 부담금을 설정하는 것이 의무화의 핵심임을 강조함
- 이와 더불어 연방 주총리들은 주총리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건물소유주의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차기 회의까지 의무화 계획을 제출할 예정임
- 그러나 독일 보험협회(GDV)는 보험 가입의 의무화보다는 기존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자동 계약 연장 옵트 아웃 옵션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재해취약지역 중심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있는바, 독일의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인지도와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 정책성 보험으로 보험료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주택 20.2%, 온실(비닐하우스) 7.6%에 그친 실정임¹⁰⁾
- 이에 대해 정부는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동 지역 자치단체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바 있음¹¹⁾

4) 신연방주(Neue Bundesländer)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만들어진 연방주로 과거 동독의 행정구역이었음.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엔주가 이에 해당함

5) Schwarz, Wagner(2006), "Versicherungspflicht gegen Elementarschäden"

6) Deutscher Bundestag(2016), "Pflicht zur Versicherung von Elementarschäden"

7)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은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을 의미함

8) Versicherungsbote(2022. 6. 3), "Pflichtversicherung für Elementarschäden: Bundesländer stimmen dafür"

9) Justiz in Bayern(2022), "Bericht der Arbeitsgruppe „Pflichtversicherung für Elementarschäden“"

10) 행정안전부(2019),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최근 5년)"

11) 행정안전부(2021), "재해취약지역 중심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계획 수립 의무화된다"